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637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황유리

피고B

변론 종결 2024. 9. 24.

판결 선고 2024. 11. 12.

주 문

-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제1항 기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 C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9161호). 위 법원은 2016. 2. 1. 원고가 청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C이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2006. 6.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을 발령하였다. 해당 이행권고결정은 2016. 2. 20.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고 D(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1. 8. 24. 사망하였다.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과 자녀인 C, 피고, F이 있었다. 이들은 2022. 2.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22. 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체결될 당시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지분대로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항용남

별지